

상리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6. 10. ~ 6. 13.(4일간)

 감사범위 : 2012. 5. 15. 이후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16건(시정 6,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6건 3,494,050원(추징 2건 970,800, 회수 4건 2,523,250)

지적사항

1. 비밀 및 대외비 문서관리기록부 재분류 부적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파기) 제2항 비밀의 파기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보관책임자) 제3항 제3호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같은 규칙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제2항 및 예천군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비밀문서를 재분류 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까지를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2년 6건, 2013년 6건 등 총 12건의 비밀에 대해 재분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주민등록증 회수 처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훼손 및 주요기재내용의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여야 함에도, ○○○ 외 3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변경사항 등으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미회수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통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종합민원과-43934(2012.12.13)호에 따라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2013년 9건, 2014년 2건에 대하여 1차 조사자인 마을 담당직원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역 작성 누락과 1차 조사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업무에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이륜자동차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9조, 제101조, 제103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 변경사항이 있거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양수증명서 작성시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민원사항은 민원실 또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접수하고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이륜자동차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2012년 13건, 2013년 2건에 대하여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지 않았고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상에 수입인지 2건(6,000원)을 미소화 함

▶ 미소화한 수입인지 2건 6,000원을 소화하고, 관련법규에 대하여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 외 5명에 대하여 964,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미부과한 과태료 964,800원에 대하여 부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환경미화원 ○○○에 대하여 휴가일수 착오계상으로 53,850원 과다 지급

- ▶ 과다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 53,850원을 회수하고,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준공검사자 임명 부적정

- 「예천군 건설공사 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복무규정」 제245호(2003.03.14.) 제30조제1항2호에 도금액 10억미만은 6급 공무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1천만원 미만의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도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21건(2012년 4건, 2013년 14건, 2014년 3건)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처리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9. 경로당(노인여가시설) 관리카드 관리 소홀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9762(2008.4.16.)호에 의거 경로당실태조사 시행 후 2008.4.23.일부터 변경된 서식의 경로당관리카드를 작성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관내 11개소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구 서식으로 경로당현황, 변동사항, 경로당점검(안전) 및 지도사항을 추진 기록 중이며,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를 위하여 변경된 서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경로당 점검(안전) 및 지도 관리에 소홀
 - ▶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변경된 경로당 관리카드로 재작성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농약빈병 수거함 관리 부적정

-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5년 8월 농약빈병수거함을 제작 보급하여 매년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11개리 11개소에 설치된 농약빈병 수거함 점검해 본 결과 모두 농약빈병 외 일반쓰레기들이 투입되어 있고, 2개소는 뚜껑이 없는 등 농약빈병 수거함 관리 소홀
 - ▶ 투입된 일반쓰레기는 정리하고 마을관리자를 지정·관리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1.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담 지급

- 농정과-1337(2012.1.26.), 농정과-665(2013.1.14.), 농정과-1116(2014.1.20.) 호와 관련하여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에게 총1,989,400원 부담 지급
 - ▶ 부담지급된 학자금 1,989,400원을 회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2. 과수분야 지원사업 시설물 및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 과실 채소류 등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해소를 위해 지원된 2012년, 2013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정과-3070(2013.02.22.), 농정과-3274(2012.02.24.), 농정과-2443(2013.02.13.), 농정과-2436(2013.02.13.), 농정과-9162(2013.06.25.)호에 의거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 10년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2012년, 2013년에 지원된 과수분야 지원사업 시설물 및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음.
 - ▶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과다 징구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신청 시 신청인이 1,000㎡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가 신청 당시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20건에 대하여 구비서류가 아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과다 징구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4. 공사비 미 정산 및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주)■■■■과 계약한 ■■■ 농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포장의 바닥비닐 및 양생비닐 수량이 설계내역서 및 수량 산출서상 566㎡ 계상되었으나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기준 230천원(제경비 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5. 공사비 미 정산 및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배수로 재설치 공사에 대하여 U형개거 버림콘리트 거푸집 수량이 설계내역서 및 수량 산출서상 18.2㎡ 계상되었으나 실제 시공 수량이 9.1㎡이었으나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 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 250천원(제경비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5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6. 점도구역 관리 부적정

- 점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2호 및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점도구역 내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리면 관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 ▶ 점도구역내 기존건축물(공작물)을 조사하여 미작성 된 기존건축물을 관리 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